

미래에셋증권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고객과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정보교류차단'과 관련하여 내부통제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2.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
3.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 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1.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 정보 중 다음의 정보
 -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 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2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회사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
2.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 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중 다음의 정보
 -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 회사 '내부통제기준 시행세칙'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정보 (1개월)
 -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회사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
(고유재산운용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중 전담중개업무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의 투자자재산을 전담중개업무로서 보관·관리하는 신탁업간의 정보)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자본시장법시행령 제50조 1항에 해당하는 정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 및 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의 제반 정보 등을 취급하는 부서들을 대상부문으로 설정

거래제한 상품 목록 등의 주요 지정 기준

1. 회사가 주식, 주식관련사채 및 이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의 모집·사모·매출의 인수 계약이나 주선 계약을 체결한 법인
2. 인수·합병의 중개, 주선, 대리, 조언 업무를 수행중인 법인 및 그 상대 법인
3. 지분의 매각 및 취득의 중개, 주선, 대리, 조언 업무를 수행중인 법인 및 그 상대 법인
4. 회사를 공개매수 사무취급자로 지정한 법인 및 당해 법인의 공개매수 대상 유가증권 발행 법인
5. 기타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 가능한 직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거래유형 및 대응방안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에 대해 거래제한 등으로 기록 관리 합니다.

1. 업무상 취득한 직무 관련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이용하는 행위
2. 투자자의 매수·매도 체결 전 회사 또는 임직원의 계산으로 선행매매 하는 행위
3. 회사가 보유한 증권을 신탁, 일임 재산으로 매수하거나 신탁, 일임 재산으로 보유한 증권을 회사 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4. 신탁, 일임재산의 운용 정보를 회사 또는 임직원의 매매에 이용하는 행위
5. 일임·신탁업자가 관계회사의 과대평가된 자산을 고객자산으로 편입하는 행위

미래에셋증권은 정보교류차단 및 이해상충예방을 위하여 금융투자협회 표준내부통제기준을 회사의 '내부통제 기준'으로 반영하고,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시행세칙'에 반영하여, 내부통제 정책과 제도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